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·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
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교육부 등 4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·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·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, 대학의 장이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·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며,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 직권 말소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폐업 사실 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국민·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)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교육부장관이 정한다”를 “학칙으로 정하되,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 따른 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”로 한다.
제7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)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의 개정)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의 세부기준란 중 “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”을 “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별표 1의4 제4호 후단 중 “자기테이프·자기디스켓 등 전산”을 “전산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항을 확인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설의 설치”를 “기구·기기의 철거”로 한다.

제7조(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시하기 7일”을 “실시하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협동과정) ① (생략)	제23조(협동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교육부장관이 정한다.</u>	②----- ----- ----- <u>학칙으로 정하되,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 따른 학과등·전공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</u>
제74조(규제의 재검토)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74조(규제의 재검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<u>제23조제2항에 따른 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: 2017년 1월 1일</u>	<u><삭 제>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서 등) ① (생 략)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 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 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 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 육·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 다.	제5조(사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③ (생 략) 제8조(규제의 재검토) 교육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5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 서·전문직원의 배치기준 및 교육·훈련 시간: 2022년 1월 1일	<u><삭 제>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대학원 등의 설치기준) ①·② (생략) 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④ (생략)	제2조의2(대학원 등의 설치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) ① (생략)	제22조의2(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건물주 등 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화상영관의 <u>시설의 설치</u> 여부	2. ----- <u>기구·기기의</u> <u>철거</u> ----- --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<u>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	제6조(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) ① ----- ----- <u>실시하기</u>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규제의 재검토) ① <u>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	제22조(규제의 재검토) <u><삭 제></u>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3 - 6161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사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2
환경부 물이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7
산림청 목재산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875